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7 - 980호

의 안 명 「공직자의 기술경력관리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국 토 교 통 부

의결연월일 2017. 11. 27.

주 문

「공직자의 기술경력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1월 27일

위원장 박은정

위원 박경호

위원 이상민

위원 신근호

위원 박계옥

위원 김현철

위원 허용석

위원 전준경

위원 이호용

위원 이재경

위원 황성주

위원 윤영훈

위원 홍인욱

위원 김수정

정 본 입 니 다 .

2017. 11. 27.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별지>

공직자의 기술경력관리 투명성 제고

2017. 11.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부패실태	5
-------------------	---

문 제 점 : 경력확인서 접수/발급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접수·처리 체계 미비	6
2. 건설기술자 경력 확인 미흡	7
3. 발급 후 사후관리 부실	9

개선방안 1. 경력확인서 접수/발급 관리 강화 2. 경력확인서 발급담당자 실명제 도입	10
-----------------------------------------------------------------	----

문 제 점 : 경력 검증 관련

1. 사전 검증 체계 부재	11
2. 사후 검증 미 실시	12

개선방안 단계별 경력 검증 내실화 (접수, 경정, 사후)	13
---------------------------------------------	----

IV. 조치사항	14
----------------	----

- 붙임 :**
1. 관련법령
 2. 기관별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3. '16년 기관별 건설기술 경력 등록 건수

I

추진배경 및 경과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2번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 배경

- 사전입찰심사*(PQ)제도로 민간업체의 퇴직공직자 영입 불가피
 - 퇴직공직자는 PQ심사 시 경력 중복이 없고 장기간 발주 감독 업무 등에 근무하여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점수 획득에 유리
 - * 사전입찰심사제도 : 발주자가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100점) :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1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업무중첩도(10점)
- 기술직 공무원은 민간업체 재취업 목적으로 스스로 경력을 부풀리거나 현직자에게 청탁하여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부당한 관행 존재
 - * '선배가 밥벌이 한다는 데...퇴직공무원에 가짜 증명서 남발' ('17. 2. 한국일보)
- 이에 따라 건설기술분야 민간부패 차단 및 기술경력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17. 7~'17. 9.) 및 개선초안 마련 ('17. 10.)
 -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실시 (17. 11.)
 -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실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 11.)

II

일반 현황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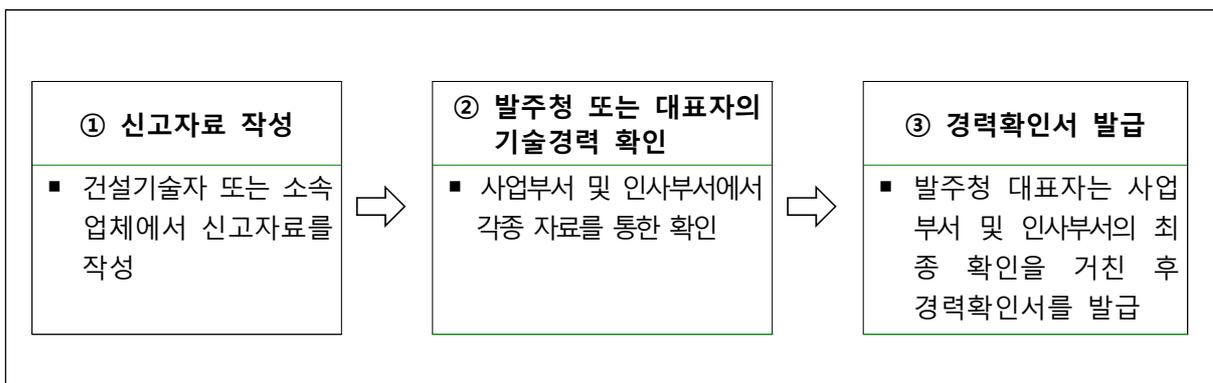
- (도입배경) 개인별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설기술의 전문화 및 이중취업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는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 관련 법령 】

-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
-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제5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 (신고절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력확인서에 대해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확인 의무를 부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 (활 용) 설계·감리 등 용역 수주, 사전입찰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 등에 활용

□ 업무수행 수탁기관

- (수탁기관)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 건축사협회, 한국지적협회 등 5개 수탁기관에서 수행

< 수탁기관별 등록 대상 >

- ☑ 수탁기관을 통해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총 777,125명이며, 이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743,840명으로 전체 등록인원의 95.7%를 차지

수탁기관	구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공간정보산업협회	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한국지적협회	단일 지적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그 외의 건설기술자

- (수탁업무)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건설기술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

【 건설기술자 신고 제도 연혁 】

연도	주요내용
1989.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를 건설기술자로 최초 인정
1995. 8.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고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특·고·중·초급으로 분류하는 등 경력관리제도 시행
1996. 8.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세부기준」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 도입
2007. 3.	특급은 기술사, 고급은 기사·산업기사까지 인정하고, 학·경력자는 초급으로 등급제한 조치
2014. 5.	건설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 및 교육을 지수화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고 등급제한 폐지

□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2016 12.기준)

- 건설기술자로 등록된 총 인원은 777,125명
- (등급별) 특급기술자가 175,852명으로 22.6%, 초급이 422,530명 54.4%
- (분야별) 토목 및 건축분야는 623,898명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

【 등급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설기술자 (비율)	777,125 (100%)	175,852 (22.6%)	98,288 (12.6%)	80,455 (10.4%)	422,530 (54.4%)

【 분야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토목	건축	기계	안전 관리	도시·교통 및 기타
건설기술자 (비율)	777,125 (100%)	315,510 (40.6%)	308,388 (39.7%)	61,142 (7.9%)	23,360 (3%)	68,725 (8.8%)

【 자격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무자격)
인원 (비율)	777,125 (100%)	28,118 (3.6%)	14,473 (1.9%)	25,5501 (32.9%)	108,263 (13.9%)	114,823 (14.8%)	255,947 (32.9%)

- (공공기관 건설기술자 현황) 공공기관 재·퇴직자 중 신고 기술자는 29,717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자 중 3.8%

(단위 : 명, %, 2017.9.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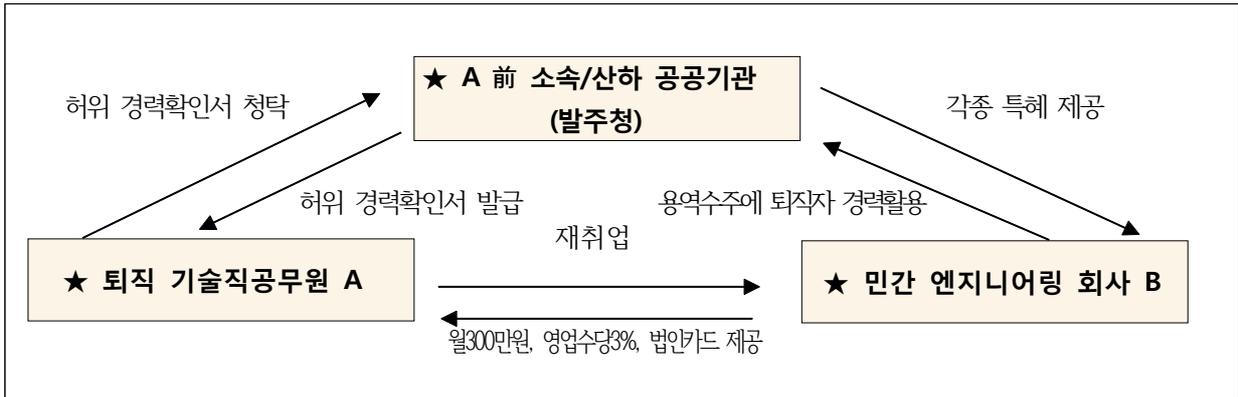
구분	계	재직자	퇴직자
합계	29,717 (100%)	10,999 (37.0%)	18,718 (63.0%)
중앙행정기관	1,856 (6.2%)	480 (25.9%)	1,376 (74.1%)
광역자치단체	7,298 (24.6%)	2,392 (32.8%)	4,906 (67.2%)
교육청	915 (3.1%)	327 (35.7%)	588 (64.3%)
기초자치단체	12,700 (42.7%)	2,946 (23.2%)	9,754 (76.8%)
공직유관단체	6,948 (23.4%)	4,854 (69.9%)	2,094 (30.1%)

※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건설기술자 기준 ② 공직유관단체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패실태>

<퇴직 기술직공직자-민간업체 유착 체계도>



(민간) 퇴직 기술직공직자를 각종 입찰심사 목적으로 포섭

- 사전입찰심사(PQ), 입찰 정보 획득 등의 목적으로 관내 퇴직 기술직공직자를 영입하여 일정 보수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

◆◆ ☆구 도시환경국장 → ■■■■ 자회사, ★★도시공사 이사 → ▲▲엔지니어링
 ○○ 건설관리본부장 → △△기계금속, ●● 시설정비과장 → ▣▣금속
 ◎◎ 도시주택국장 → ▧▧엔지니어링, ◇◇ 건설과장 → ●●리 외 다수

* 재취업 제한요건인 '자본금 10억, 연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업체'를 피해 재취업

(퇴직공무원) 경력을 허위 또는 부풀리기 하여 민간업체에 재취업 하여 허위경력으로 입찰에 참여, 각종 설계/감리 용역 브로커로 활동

- 건설기술 경력확인 절차가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후배 현직 공무원에게 허위 기술경력신청서 발급 청탁

* ◇◇광역시 전 도시재생과장 송**은 퇴직('14.10.) 후 바로 관내 ▣▣엔지니어링에 재취업('14.11)하여 허위 경력으로 각종 입찰에 참여, ▣▣엔지니어링은 ◇◇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다수의 공사용역 수주 (102건, 41억원)

(소속기관/발주청) 허위 경력 신청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 발급, 입찰심사 시 각종 특혜 제공

- 선배 퇴직공무원의 경력에 대한 확인 없이 온정적으로 거짓 경력에 대해 기관장 직인 날인

문 제 점 : 경력확인서 접수 발급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접수·처리 체계 미비

- 건설기술자 신고증명 발급 업무의 접수·처리부서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인관리가 허술해 주먹구구식으로 발급
 - 공식적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고, 퇴직공직자가 친분이 있는 후배 공무원 등에게 증명서 발급을 청탁

▷ 전 ◆◆광역시 도시환경국장 서◇◇은 근무 당시 도시환경국 주무계장이었던 이☆☆에게 본인의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이에 이☆☆계장은 내부 결재나, 확인 절차 없이 발급 ('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지역 지자체들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전관들의 용역수주용 청탁을 받고, 퇴직한 기술직공무원이 각종 기술설계용역에 참여하였다는 가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술직 선배들이 퇴직 후 밥벌이하겠다는 데 후배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와 발급관리가 허술한 데 기인 (2017.2, 언론보도)

▷ ◎◎◇구 퇴직자 김**는 동 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후배에게 찾아가 허위의 기술경력을 메모로 전달하고 발급을 부탁하여 경력확인서 발급('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직인(공인)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거짓 기술경력에 직인 사용 남용

▷ □□광역시는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날인 시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력확인 시 □□광역시장의 공인을 날인해주며 '16년 이전에는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한 한글문서로 관리하여 연번이 비거나, 날인 요청자가 작성한 기록 확인 불가 ('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 건설기술자 경력 확인 미흡

- 국토부 고시에는 근거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경력 부풀리기, 거짓 신고 만연**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허위경력) 본인 경력과 무관한 실적, 순수한 민간 분야 실적을 허위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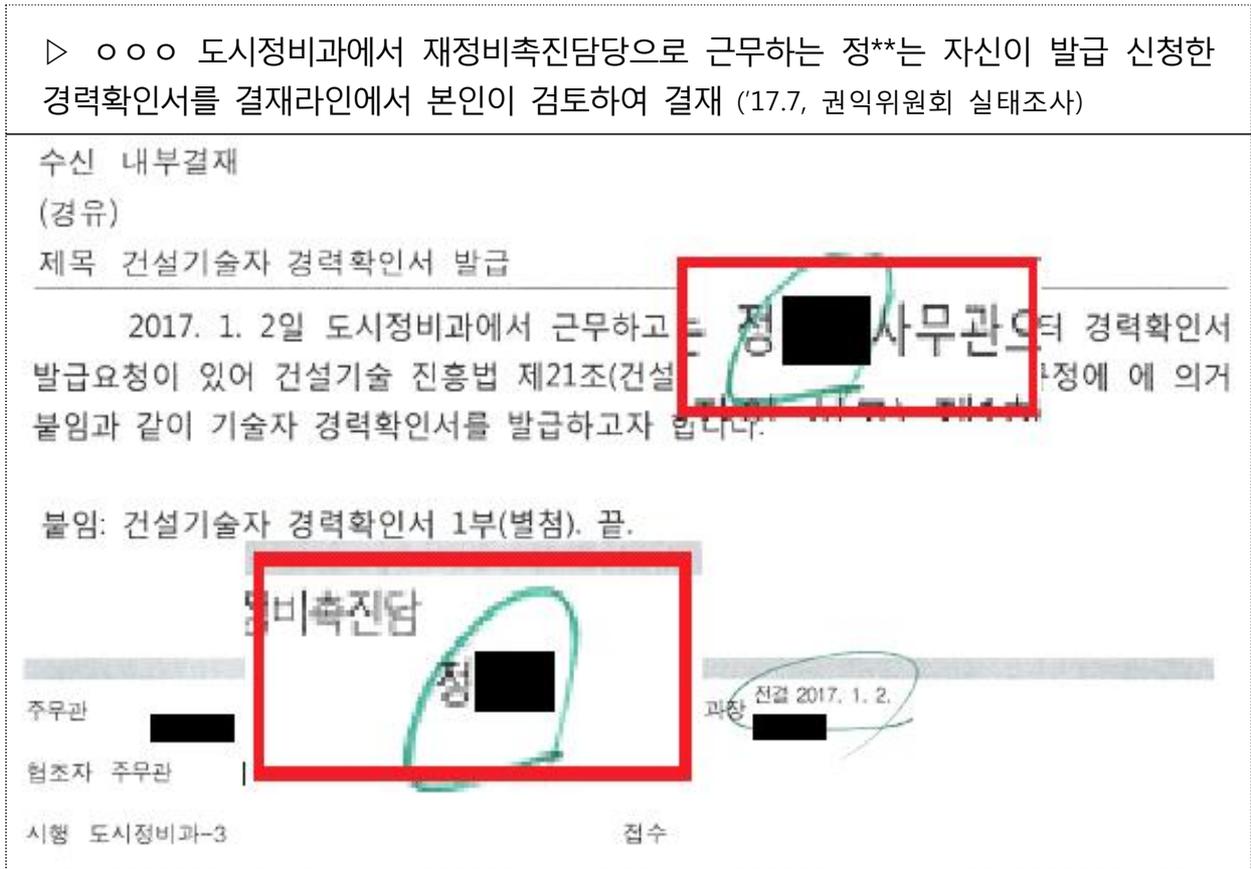
▷ 전 ■■ 김**은 '89. 9. ~ '15. 12.까지 종교시설(●●지) 신축공사, 분양 아파트 건축, 병원 신축공사 등의 관내 민간공사이력을 마치 본인이 관리·감독한 실적인 양 **허위로 총 30건을 신청하여 3개 분야(건축, 건축시공, 품질관리)에서 특급기술자 등급을 부여** 받고 △△ 관내 **엔지니어링에 재취업 ('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전 ▲▲광역시 도시재생과장 송**은 06. 8.부터 08. 1.까지 ▽▽구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며 총 11건의 공사/용역 감독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재난관리, 복구지원이 주 업무인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도시재정비 사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감독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였고, 본인 소속은 ▽▽구임에도 ▲▲ ▲구, △구, ◇◇구, ▼구의 용역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 신고 ('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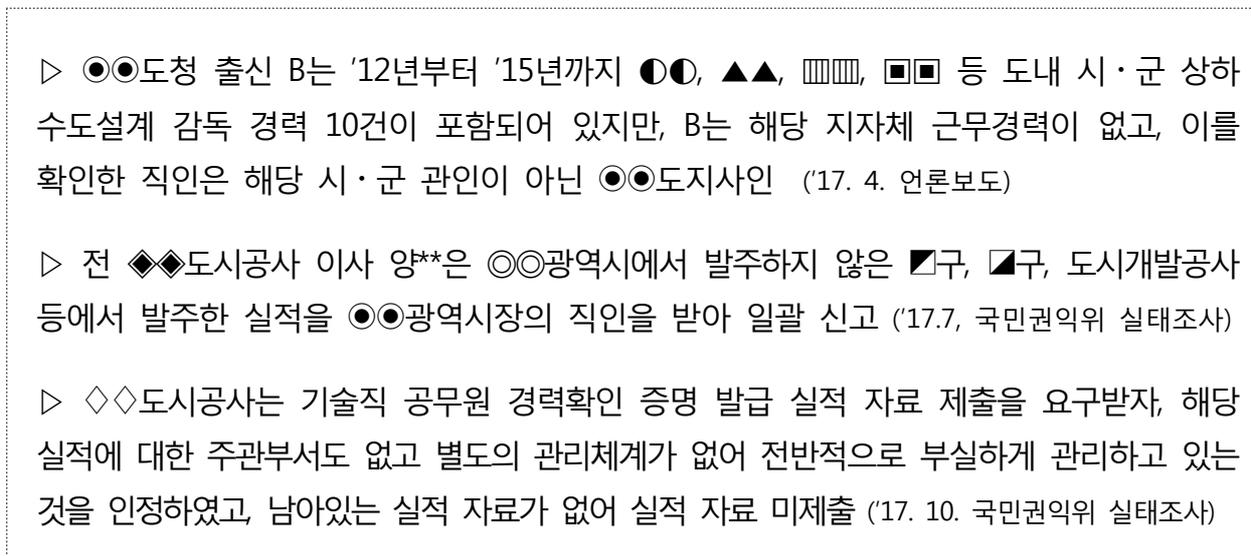
▷ ■■ 시청 A는 ■■시가 '07년 발주한 상수도설계용역비 6,400만원을 2억3,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개월을 1년으로 부풀려 신고하였고, 퇴임 직전 1년간 20여건의 상하수도 공사 감독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A는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단 한 차례도 없음 ('17. 4. 언론보도)

▷ ◇◇광역시에서 2년간의 건설기술자 신고를 목적으로 발급한 경력확인서 중 **2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1건에 대해서만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 (20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셀프발급) 자신이 발급 신청한 경력확인서를 본인이 검토 후 신고용 경력확인서 발급 받았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미첨부



- (권한 없는 자의 확인) 경력확인서는 해당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함에도, 타 기관 경력·실적까지 일괄 발급



3. 발급 후 사후관리 부실

- 기본적인 발급 현황도 관리 되지 않고, 내부결재 문서, 관련 증거서류 부재로 경력의 진위여부 확인, 허위경력 발급자 추적이 어려움
- (현황관리 부실) 일부 공공기관 발급 실적과 실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수와 차이 발생

<참고>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 건, 대상기간 : 2016. 1. 1.~12. 31.)

구분	기관 자체 파악 건수	실제 전기협 등록 건수	차 이
A광역시자치단체	0	9	9
B광역시자치단체	7	10	3
C기초자치단체	0	2	2
D공직유관단체	6	24	18

* '16년 A광역시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건수는 9건이나, A광역시자치단체는 1년간 전혀 발급 내역이 없다고 제출

- (관련서류 부재) 발급된 경력확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결재서류도 없고, 발급 처리자/확인자에 대한 정보도 없는 경우가 다수

▷ ○○광역시의 민원사무전용 공인날인기록부상 경력확인서 발급내역 20건 중 결재문서가 없는 경우가 10건(50%), 업무처리자(기안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7건 (35%) ('17.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실시한 모든 기관에서 발급담당자, 확인자 등을 지정하지 않고 제각각으로 운영 중 ('17.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발급일자 누락) 발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확인서 발급이 상당수이며, 경력확인서가 여러 장인 경우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인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 허위 실적 등록에 악용될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내역 관리 강화]

✓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발급 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별표 서식 신설

②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개정 예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제8조)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건설기술자 신고 증명 접수(처리)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예시> 건설기술자 신고 증명 접수(처리)대장

신청인 작성				담당자 작성					
신청일자	성명	신청건명	신청부수	처리부서	승인근거 (문서번호)	발급일련번호 (처리일자)	발급부수	발급업무 처리자	기관 담당자
예시) 2016.1.10.	홍길동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2	건축과	건축과-121	2017-1	2	김OO	박OO
***	***	***	***	***	***	2017-2	***	***	***

[경력확인서 발급담당자 실명제 도입]

✓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확인 책임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별표13 서식 개정

* 경력확인서에 ①발급일련번호, ②확인자, ③결재자, ④감사부서 연락처 명기

<개정 예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개선안(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width: 100%; height: 40px; margin-bottom: 5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유의사항</p> <p style="font-size: x-small;">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 * @@@@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width: 100%; height: 40px; margin-bottom: 5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2px solid red;">①발급일련번호</td> <td style="border: 1px solid gray; width: 150px; height: 20px;"></td> </tr> <tr> <td style="border: 2px solid red;">② 확인자</td> <td style="border: 1px solid gray; width: 150px; height: 20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border: 2px solid red;">③ 결재자</td> <td style="border: 1px solid gray; width: 150px; height: 20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border: 2px solid red;">④ 감사실</td> <td style="border: 1px solid gray; width: 150px; height: 20px;">감사담당, (044) 000-0000</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유의사항</p> <p style="font-size: x-small;">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 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p>	①발급일련번호		② 확인자	(서명 또는 인)	③ 결재자	(서명 또는 인)	④ 감사실	감사담당, (044) 000-0000
①발급일련번호									
② 확인자	(서명 또는 인)								
③ 결재자	(서명 또는 인)								
④ 감사실	감사담당, (044) 000-0000								

문 제 점 : 기술경력 검증 관련

<건설기술자 경력 검증>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검증업무 수행**, 허위경력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각 시·도에 통보하여 제재 처분
- **(신고접수단계)** 학력, 자격증, 기초 경력자료 등의 진위를 민원24,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 등을 통해 접수 단계에서 확인
- **(경력경정단계)** 오신고 등으로 신고경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 **(정기 검증)** 민간 건설기술 경력자에 대해서는 아래 절차로 상시적으로 검증
 - ① 대상자 추출 (신고된 기술경력 1,000건당 1건을 표본으로 선정)
 - ② Kiskon(건설공사대장 시스템) 확인 (공사내역, 사업명, 기간 등 일치여부 확인)
 - ③ 업체 사실확인 (Kiskon 확인 결과 의심자에 대해 업체에 문서로 직접 확인)
 - ④ 기술자 사실확인 (업체 확인이 불가하거나, 업체 회신에서 경력허위일 경우)
 - ⑤ 심사조서 작성 및 제재 요청 (허위 경력 등이 최종 확인)
- **(사후 특별 검증)** 거짓신고의심자(신고대행브로커 통해 '05년 7월 이전 경력을 다수 등록한 자)에 대해 일제 점검 ('16년 도입)

1. 사전 검증 체계 부재

- **(신고접수)** 관련 경력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등록
 - * ① 경력확인서에 날인된 관인과 신고하고자 하는 경력의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 등 육안으로 명백하게 허위 신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 ② 공공기관 경력이 아닌 민간건설업체 경력을 공공기관 경력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
- **(경력경정)** 오신고 등으로 인한 경력 경정이 민간경력자에 비해 기술직 공직자는 매우 용이
 - 기술직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경력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정이 가능하므로, 전문분야 변경 등을 위해 수시 변경이 가능한 허점 존재
 - * 경정은 1회에 한하며,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경정할 수 없음. 부득이 민간 경력자가 재차 경정을 해야 할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기관의 확인 필요

▷ ㉠㉠시 전 ㉡㉡출장소장 김**은 퇴직(16.6.) 시 건설기술자 신고를 위한 ①경력 확인서의 **전문분야를 토목 시공으로 발급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후 ② **동일한 기술경력에 대해 전문분야를 토목 구조로 경정 신청, 건설기술인협회는 직권으로 경력 경정 승인하여 토목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획득** (17.9,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 사후 검증 미 실시

- (정기검증) 건설기술인협회는 공공기관 경력에 대해서는 검증 미 실시
 - '05년 협회 내부결재로 공공기관 경력에 대해서는 검증 제외 방침
 - * 건설기술인협회는 수탁기관 성격과 위상을 고려 시 기술직 공무원의 발주청 경력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 토로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기술직 공직자에 대한 검증 실적은 전무

<기술경력 검증 현황>

(단위 : 건, 2017.9.30. 기준)

건수 \ 년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민간경력 검증	1,345	483	417	289	156
공공기관 경력검증	0	0	0	0	0

- (특별검증) 특별검증으로 거짓신고자로 의심되더라도 검증대상에서 자의적으로 배제
 - 국토교통부는 '16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위법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거짓신고의심자(2,639명)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특별점검 결과>

- (공직자) 거짓신고 의심 기술직 공직자 총 72명은 검증대상에서 제외
- (민 간) 대상자 428명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문서위변조로 형사고발 대상 91건, 행정처분 대상 419건의 위법사실 확인, 나머지 2,265명은 현재 검증 중

< 개선방안 >

[기술경력 등록 전 검증 강화]

✓ 기술직 공직자의 경우 본인 신고 경력과 인사기록의 교차 비교가 가능하도록 인사부서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부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현 행)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선안)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 인사 경력증명서

현 행	개선안(예시)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생략) ② (생략)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 바. (생략) <신설>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생략) ② (생략)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 바. (생략) 사.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 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재·퇴직 건설기술자의 인사기록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u>

[경정 단계 검증 절차 개선]

✓ 기술직 공직자의 경력경정 시 경력확인서 외 별도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증빙서류 : (인사)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14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 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u>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의 경력인 경우 인사경력증명서, 업무분장확인서,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u>)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사후검증 강화]

- ✓ 기술직 공직자의 기술 경력에 대해서도 표본 추출하여 검증 실시
- ✓ 거짓신고의심자 중 공직자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검증 실시
- ☞ 기술직 공직자 경력검증 제외 내부 지침 삭제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 조치기한 : 2018. 6. 말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기관
경력확인서 접수/발급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경력확인서 발급 내역 별도 대장으로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신설 ☞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제8조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경력관리 수탁기관> ① 건설기술인협회 ② 대한건축사협회 ③ 공간정보산업협회 ④ 한국지적협회 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력확인서 발급담당자 실명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경력확인서 발급 담당자/확인자 명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 개정	
단계별 검증 내실화 (접수, 경정, 사후)	<input type="checkbox"/> (접수) 인사 경력증명서와 경력확인서 교차 비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input type="checkbox"/> (경정) 공직자 경력 경정 시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제14조 개정 <input type="checkbox"/> (사후) 공직자 경력에 대해서도 표본 추출하여 검증 ☞ 기술자 공직자 경력검증 제외 내부 방침 폐기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건설기술자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

-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1) 경력: 40점 이내
- 2) 학력: 20점 이내
-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3) 용 접 5) 일반기계	2) 건설기계 4) 승강기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
4.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④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⑧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 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	-----------------------	-------------------------

등급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text{역량지수} = \text{자격지수}(40\text{점 이내}) + \text{학력지수}(20\text{점 이내}) + \text{경력지수}(40\text{점 이내}) + \text{교육지수}(3\text{점 이내})$$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

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별점을 받은 경우	1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이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건설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한다)
 - 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 확인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 ⑧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⑨ 건설기술자가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8조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⑩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 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⑪ 건설기술자가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2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건기협 등록 기준, 상위10개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단위 : 명, 기준일 2017. 9. 30.)

연번	기관명	계	현직자	퇴직자
합계		1,692	433	1,259
1	국토교통부	890	198	692
2	조달청	174	81	93
3	해양수산부	150	25	125
4	환경부	102	24	78
5	국방부	100	23	77
6	산림청	81	12	69
7	행정안전부	61	15	46
8	법무부	51	17	34
9	농림축산식품부	51	18	33
10	문화재청	32	20	12

나.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기준일 2017. 9. 30.)

연번	기관명	계	현직자	퇴직자
합계		5,668	1,888	3,780
1	서울특별시	1,703	451	1,252
2	인천광역시	706	369	337
3	부산광역시	686	129	557
4	대구광역시	612	155	457
5	대전광역시	360	154	206
6	광주광역시	332	127	205
7	경기도	330	134	196
8	충청남도	323	133	190
9	경상남도	315	117	198
10	전라남도	301	119	182

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 명, 기준일 2017. 9. 30.)

연번	기관명	계	현직자	퇴직자
합계		2,200	252	1,948
1	부산광역시 동래구	257	10	247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49	8	241
3	서울특별시 관악구	220	23	197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16	16	200
5	부산광역시 남구	214	13	201
6	전라남도 여수시	212	89	123
7	서울특별시 성동구	210	31	179
8	부산광역시 사하구	210	17	193
9	서울특별시 성북구	206	34	172
10	부산광역시 북구	206	11	195

라. 교육청

(단위 : 명, 기준일 2017. 9. 30.)

연번	기관명	계	현직자	퇴직자
합계		695	249	446
1	경기도 교육청	102	53	49
2	전라남도 교육청	86	21	65
3	경상북도 교육청	83	21	62
4	서울특별시 교육청	70	19	51
5	경상남도 교육청	69	20	49
6	충청북도 교육청	65	26	39
7	강원도 교육청	64	22	42
8	충청남도 교육청	56	27	29
9	전라북도 교육청	54	16	38
10	인천광역시 교육청	46	24	22

※ 공직유관단체*

(단위 : 명, 기준일 2017. 9. 30.)

연번	기관명	계	현직자	퇴직자
합계		6,948	4,854	2,094
1	한국토지주택공사	2,404	1,976	428
2	한국도로공사	1,855	1,234	621
3	한국수자원공사	1,446	822	624
4	서울주택도시공사	331	201	130
5	경기도시공사	161	137	24
6	인천도시공사	143	121	22
7	부산도시공사	106	61	45
8	대전도시공사	87	54	33
9	강원도개발공사	79	35	44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6	44	22

* 위원회 실태조사 19개 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

참고 3

'16년 건설기술경력 등록 건수 (건기협 등록 기준 상위10개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단위 : 건)

연번	기관명	계 (A+B+C)	신규(A)	변경(B)	경정(C)
합계		170	20	131	19
1	국토교통부	62	3	47	12
2	환경부	37	8	26	3
3	행정안전부	21	4	15	2
4	조달청	19	-	19	-
5	농림축산식품부	8	2	6	-
6	새만금개발청	8	1	7	-
7	해양수산부	5	1	4	-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	4	1
9	국방부	3	1	1	1
10	산업통상자원부	2	-	2	-

나. 광역자치단체

(단위 : 건)

연번	기관명	계 (A+B+C)	신규(A)	변경(B)	경정(C)
합계		830	154	601	75
1	서울특별시	224	36	159	29
2	광주광역시	103	23	70	10
3	대구광역시	90	23	58	9
4	인천광역시	84	14	63	7
5	대전광역시	76	15	55	6
6	부산광역시	65	16	47	2
7	전라북도	56	10	45	1
8	충청남도	48	9	33	6
9	울산광역시	44	3	39	2
10	전라남도	40	5	32	3

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 건)

연번	기관명	계 (A+B+C)	신규(A)	변경(B)	경정(C)
합계		246	24	199	23
1	충청북도 청주시	37	3	32	2
2	경기도 성남시	31	4	23	4
3	전라북도 전주시	28	3	23	2
4	서울특별시 노원구	26	1	24	1
5	대구광역시 동구	23	3	14	6
6	부산광역시 동래구	22	3	18	1
7	광주광역시 서구	21	4	15	2
8	서울특별시 구로구	20	2	14	4
9	전라남도 담양군	20	1	19	-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18	-	17	1

라. 교육청

(단위 : 건)

연번	기관명	계 (A+B+C)	신규(A)	변경(B)	경정(C)
	합계	106	24	75	7
1	전라남도 교육청	22	5	15	2
2	울산광역시 교육청	14	4	9	1
3	충청북도 교육청	14	2	12	-
4	경기도 교육청	13	1	11	1
5	부산광역시 교육청	11	4	7	-
6	경상남도 교육청	10	-	9	1
7	충청남도 교육청	7	3	2	2
8	인천광역시 교육청	6	2	4	-
9	서울특별시 교육청	5	1	4	-
10	대구광역시 교육청	4	2	2	-

※ 공직유관단체*

(단위 : 건)

연번	기관명	계 (A+B+C)	신규(A)	변경(B)	경정(C)
	합계	519	58	418	43
1	한국토지주택공사	204	19	160	25
2	한국수자원공사	104	17	81	6
3	한국도로공사	66	8	56	2
4	서울주택도시공사	39	2	33	4
5	인천도시공사	29	1	25	3
6	강원도개발공사	23	3	19	1
7	대전도시공사	19	2	16	1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	3	11	1
9	전남개발공사	10	1	9	-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2	8	-

* 위원회 실태조사 19개 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